

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        ②(적용례)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                안 제39조제5항제6호 및 동조동항 제7호중 “연접한”을 각각 “인접한”으로 한다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          제22조제3항에 제8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                8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                9.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                제23조제4항제1호중 “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”를 “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”로 한다.                  제39조제5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                5. 서울특별시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                6.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                7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21 459 957 504"> <tr> <td>의안번호</td> <td>912</td> </tr> </table> <p>2001년 9월 일 재정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                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23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               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회부                 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                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                  가. 제안이유                  각종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 정원을 보강하려는 것임.                  나. 주요골자                  가) 총정원 감축 : 106명(안 제2조본문)                  -(현행) 15,340명 → (개정) 15,446명                  나)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: 106명(안 제2조제2호)                  -(현행) 4,874명 → (개정) 4,980명                  다.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가)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(정원의 규정)                 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■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               (전문위원 : 김남중)                  【총괄부분】                  ○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2001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에 106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2001년도 증원을 승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                  【세부사항】                  ○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보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2001년 4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소방현장 보강인력 106명 증원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임.                  ○지난 조례 개정시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화재, 수재, 지진, 건축물·교량 붕괴, 대형 교통사고 등의 도시재해</p>	의안번호	912
의안번호	912		

가 소방직만으로는 대처·예방에 한계가 있어, 도시방재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우선적 확보와 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한 과제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난번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수재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자 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42
----------	-----

2001년 9월 일  
재정경제위원회

- 1. 심사경과
 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 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30일 회부
  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, 의결)

- 2. 제안설명의 요지  
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식)

가. 제안이유  
현행 박물관의 명칭을 설립주체 위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박물관의 성격, 전시내용, 설립 및 운영주체 등을 함축하고 내·외국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  
설립주체 위주로 되어 있는 「서울특별시립 박물관」의 명칭을 「서울역사박물관」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71조)

다. 참고사항  
가) 관계법령  
《지방자치법 제105조(사업소)》  
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《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)》

- ①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실장·국장·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
(전문위원 : 김남중)  
○ 서울시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기관명에서 '시립'이라는 설립주체 중심의 명칭을 이용 시민·내용중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어,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기관명을 '서울역사박물관'으로 개칭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이용시민 중심의 명칭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【 세부사항 】

- 우리 시가 설립 중인 동 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로 도시역사박물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,
- 역사학계, 관계 전문가 등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고려해 볼때,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"15,340명"을 "15,446명"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"4,874명"을 "4,980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